예비군법(시행령 포함)

문 19. 예비군법령상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그. 수임군부대의 장은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려면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, 훈련 소집일 3일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.
- 니.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고, 그 자녀에게 전달된 때에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소집통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본다.
- 다. 수임군부대의 장이 동원에 대비한 불시(不時) 훈련을 하려는 경우 예비군대원에 대한 소집통지는 방문 통보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- 리.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 수임군부대의 장이 본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기한은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이다.

1 7, L

② 7, 7

③ ∟, ⊏

④ ㄷ, ㄹ

문 20. 예비군법령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그. 결혼 일자를 정한 후 훈련명령을 받은 甲이 훈련일과 자신의 결혼 일자가 겹쳐 훈련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본인이 원할 경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.
- ㄴ. 등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乙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없다.
- 다. 훈련명령을 받은 후「형사소송법」에 의해 구속된 丙은 훈련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훈련 연기원서를 丙의 고용주로 하여금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그. 지방의회의원인 丁은 훈련일이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공직 선거기간 중이 아닌 때에는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.
- 1 7, L
- ② 7, 2
- ③ ∟, ⊏
- ④ ⊏, ⊒

문 21.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무장공비가 2021. 11. 1. 경기도 A 지역에 침투하였다가 발각되어 도주하였다. 그 무장공비의 도주로로 예상되는 경기도 B 지역에서 무장공비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어 수탁경찰서장 甲은 2021. 11. 3. B 지역 주민에 대한 피난 명령을 하였다. B 지역 주민 乙은 피난 명령으로 인해 농작물을 제때 수확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었다. 甲은 2021. 11. 7. 乙에게 해당 농작물의 시가를 100만 원으로 적은 손실증명서를 발급하였다.

- ① 甲은 피난 명령을 하려면 피난 명령의 내용·기간·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.
- ② 甲은 피난 명령 내용을 수임군부대장에게 보고하거나,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Z이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乙이 손실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면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문 22. 예비군법령상 재해 등에 대한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훈련 중에 부상을 입고 장애보상금을 받았다가 그 상이(傷痍)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「군인 재해보상법」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되, 이미 지급받은 장애보상금은 공제하지 않는다.
- ② 육군참모총장이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, 수임군 부대의 장으로부터 휴업 보상금의 지급 요청을 받은 관할 군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,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.
- ④ 예비군대원으로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.

문 23. 예비군법령상 甲~丁에게 해당하는 법정형에 대한 설명으로 <보기>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甲이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전시·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동원된 예비군이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작전지역에 출입하는 乙을 검문하자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
- 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예비군대원 丙이 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반항한 경우
- 전시·사변 상황에서 예비군 동원명령을 받은 예비군대원 丁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않은 경우
- 예비군의 무기·탄약·장비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戊가 과실로 이를 분실한 경우

- <보 기> -

- ㄱ. 甲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, 乙은 벌금형에 처할 수 없다.
- ㄴ. 甲에 대한 법정형보다 戊에 대한 법정형이 더 경하다.
- 다. 乙의 행위가 무장공비와 교전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, 乙과 丁에 대한 법정형은 같다.
- ㄹ. 丙과 달리 戊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.
- 1 7, 6
- ② 7, ⊏
- ③ ∟, ⊒
- ④ ⊏, ⊒

- 문 24. 甲은 수탁경찰서장 乙이 동원한 예비군대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였다.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 - つ. 甲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.
 - 니. 甲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 - C.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甲이 아직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경우 甲이 乙에게 그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.
 - 리. 甲이 부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甲의 유족이 보상을받기 위해서는 乙이 발급한 사망증명서를 첨부하여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① 7, L

② 7, 7

③ ∟, ⊏

④ C, 己

- 문 25.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자원이 81명 이상 400명이하인 경우는 중대로 편성한다.
 - ② 같은 구내(構內)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 - ③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이 예비군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편성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할 것을 관할 지방병무청장 에게 신청한 경우, 그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직장의 장에게 부대를 조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.
 - ④ 대대로 편성된 직장예비군 소속 예비군자원이 400명이 된 경우 직장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신청하여야 한다.

문 26.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하고자 한다.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□. 동원명령을 받은 예비군대원이 동원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경우, 그 행위를 처벌 하는 법정형에 구류가 포함된다.
- L.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이내에 응소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.
- 다. 무장소요가 있는 지역에서 경찰력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속한 진압을 위해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.
- 리.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① 7. L
- ② 7. =
- ③ ∟, ⊏
- ④ ㄷ, 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시행령 포함)

- 문 27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중 호선하는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 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이 된다.
 -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에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,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 - ④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